

일본의 경찰법 일부개정에 대하여

이 강 수
(치안연구소 총경)

최근 일본경찰은 광역조직범죄 등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법 일부를 개정하여 금년 6.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일본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이원적 경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을 시끄럽게 했던 움진리교 사건 등의 수사과정에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간에 관할과 업무소관 다툼 등 불협화음과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사건해결이 지연되고, 사건이 더욱 심각하게 발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국회차원에서까지 다루어짐으로써 국가경찰 기능을 강화하는 경찰법의 일부개정이 있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경찰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정의 배경

움진리교 사건은 대량의 독가스(샤린)를 제조하고 이를 지하철 등에서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살포하고 재판관의 살상이나 수사교란 등을 목적으로 샤린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등 지역적으로나 규모, 목적, 피해정도 등 모든 면에서 일본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복잡하고도 대규모적인 사건이었다.

물론 일본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대다수의 범인을 검거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할구역 외에서 신속한 수사와 지방경찰간 업무분담과 협조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즉, 경시청과 전국의 도도부현(지방경찰) 경찰이 관할구역 외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함에도 경찰법 61조에 도도부현 경찰이 관할구역 외에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할내의 공안유지등과 명확히 관련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찰이 관할구역

이외의 옴교 교단시설 등에 대한 수사착수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사건이 더욱 심각한 사태로 발전 되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옴교 사건에서는 전국의 도도부현 경찰이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관여할 도도부현 경찰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무를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가 등에 관해서 경찰청(국가경찰)이 주도적이지 못했고 도도부현 경찰은 현실적으로 지휘, 조정의 권한이 없음으로 인해 사건의 대응에 비효율적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옴진리교 사건과 같은 광역조직범죄 등에 신속정확히 대처하기 위해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경찰청 장관의 권한, 도도부현 경찰의 관할구역외에서의 권한 등에 관해 일부개정이 행해졌다.

2. 개정규정 내용과 취지

제5조 (임무 및 권한)

1. 생략

2. 국가공안위원회는 전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사무에 관하여 경찰청을 관리 한다.

(1)~(4) 생략

(5)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구역에 있어

서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광역조직범죄 기타 사안(이하 광역 조직범죄 등이라 한다)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의 태세에 관한 사항

(6)~(7) 생략

[취 지]

법제5조제2항과 제17조는 국가공안위원회 및 경찰청의 권한에 속한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옴진리교사건이 그랬던것 같이 광역조직범죄등은 전국의 광범한 구역에 걸쳐 공안 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일뿐만아니라 나아가서는 국가의 공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또한 광역조직범죄 등에 대처하기위해 전국 도도부현경찰이 전체로서 어떻게 대응태세를 갖추 것인가에 관한 판단은, 전기와 같이 국가기관이 판단해야할 사항이다.

이에 광역조직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의 태세에 관한 것을 국가공안에 이바지하는 경찰운영, 즉 국가경찰에 속하도록하여 국가공안위원회 및 경찰청이 담당토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광역조직범죄 등에 대

경찰법 17조(권한)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제5조 2항 각호에 든 사무를 담당하고 동조 제3항의 사무에 있어서 국가공안위원회를 보좌한다.

하여는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경찰청이 그 방침, 계획 등을 정하게 되고(법제5조제2항, 제17조) 또한 경찰청장은 그 방침, 계획 등을 도도부현 경찰에 실시시키기위해 도도부현경찰에 대해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고 지시를 하며 지시의 이행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감독을 행하게 되었다.(법제16조2항)

제60조의 3(광역조직범죄등에관한권한)
 도도부현 경찰은 광역조직범죄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관할구역 외에 권한을 미칠수(행사할 수) 있다.

[취 지]

이미 논술한바와 같이 움진리교 관련사건과 같은 광역 조직범죄 등에 관해서는 경시청 등 전국 도도부현 경찰이 특히 신속히 대처 할 필요가 있을 때, 도도부현 경찰이 관할구역의 공안유지 등에 관련되는지 여부의 개별적 구체적 판단을 통하지 않고 필요한 한도내에서 관할구역 외에까지 권한을 미칠 수 있게 하였다.

[제61조의 규정과의 관계]

전기한 바와 같이 본조는 제61조의 규정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며 상호 그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61조의 3 (광역조직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1. 장관은 광역조직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도부현 경찰에 대해 광역조직범죄 등의 처리에 관련된 관계 도도부현 경찰간의 분담, 기타 광역 조직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의 태세에 관한 사항에 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도도부현 경찰은 전항의 지시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제 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른 도도부현 경찰에 대해 광역조직범죄 등의 처리에필요한 인원의 파견을요구하고, 제60조의 3의 규정에 의해 광역 조직범죄 등을 처리 하기 위해 그 관할 구역외에 권한을 미치고 그외 이절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취 지]

광역조직범죄 등에 대처하기위한 경찰의 태세에 관한 것을 국가공안위원회 및 경찰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함과 병행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한으로서 도도부현 경찰에 대한 경찰청 장관의 지시권을 정비한 것이다.

법 제5조 제2항 5호 및 제16조 제2항의

경찰법 16조 2항 경찰청 장관은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에 따라 경찰청의 청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임면하고 -----
 ----- 경찰청의 소장사무에 있어서 도도부현 경찰을 지휘감독한다.

규정에 의해, 경찰청 장관은 광역조직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태세에 관련된 것에 대해 도도부현 경찰을 지휘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조는 그 지휘감독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지시의 작용에 대해서 그 요건 및 효과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법 제5조 제2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제기된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도로교통법, 국제수사공조법, 국제긴급원조대의 파견에 관한 법률에 국가공안위원회의 도도부현 경찰에 대한 지시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법 제5조 2항 제5호에 제기한 사무에 대해서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대응하여 경찰청장관을 지시의 주체로 한 것이다.

제30조 (관구경찰국의 설치)

1. 경찰청 소관사무 중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8호까지, 제10호에서 12호까지 및 제15호에서 17호까지 예시한 사항에 관련한 것을 분장시키기 위해 지방기관으로서 관구경찰국을 둔다.

2. 생략

제33조 (동경도 경찰통신부 및 북해도 경찰통신부)

1. 경찰청 소관사무 중 동경도 및 북해도 구역에 있어서 제5조 제2항 제11호에 든것을 분장시키기 위한 지방기관으로서 동경도 경찰통신부 및 북해도 경찰통신부를 둔다.

2. 3. 생략

[관구경찰국 사무분장 정비]

관구경찰국이 분장하는 사무는 경찰청 소관 사무 중 그 성질상 당연히 지방기관이 담당할 필요가 없는 사항 또는 지방기관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없는 것을 제외한 사무로 하고 있다.

광역조직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태세에 관하여는 관구경찰국에 부 현 경찰을 통해 광역조직범죄 등의 징후나 기타 관련사안에 관한 정보수집과, 법제 61조의 3의 규정에 의해 경찰청 장관이 부현 경찰에 지시한 사항에 대한 실시상황 파악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관구경찰국에 분장시켰다.

[동경도 경찰통신부 등 사무분장 정비]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이다.